

지역균형인재 판단 기준

○ (지역균형인재) 학위과정 유형(학사, 석사, 박사)을 불문하고 지방대학*에 재학 중이거나 지방대학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자**

* 대학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·경기도·인천광역시 및 해외가 아닌 비수도권 지방대학

**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는 지역균형인재에 포함되지 않음

○ (지방대학의 판단) 지방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원격 대학 및 각종학교 제외)

①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의 본교

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분교

※ 지방대학에 해당하는 분교 : 연세대(원주), 동국대(경주), 건국대(충주), 고려대(세종)

※ 교지분리대학(이원화 캠퍼스)은 분교와 달리 본교와 분리된 별도의 대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대학 여부를 판단

③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다음의 고등교육기관은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

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
㉠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
㉡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
㉢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
㉣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㉤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따른 경찰대학
㉥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육·해·공군사관학교
㉦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
㉧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육군 제3사관학교
㉨ 「국방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국방대학교
㉩ 「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
㉪ 「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
㉫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폴리텍대학 등

④ 지방 소재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

※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지방 소재 지역대학은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